

의안번호	제2911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2. 27.

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1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2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 확대(가족 포함) 및 임대기간 조정, 농기계 운반비용 인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(안 제2조)

나. 임대기간 조정(안 제8조)

- 일 단위에서 반일 단위 추가

다. 임대농기계 배송비 인하(안 제9조)

- 왕복 3~4만원 → 2만원

라.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한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정비(안 제12조)

마.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보완(안 별표 1)

- 1포대(40킬로그램) 당 1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-1916(2025. 1. 13.)호,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00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. 17. ~ 2025. 2. 6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사용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가족을 포함한다.(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가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(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)

나.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(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)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굴삭기, 스kid로더”를 “굴착기”로 한다.

- ④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전일임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전일임대: 09:00부터 18:00까지

2. 반일임대: 09:00부터 13:00까지

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 같이”를 “1회 1만원(왕복 2만원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 중 “1회 1개월, 2회 3개월, 3회 6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
같은 항 제4호 중 “초과하여”를 “무단으로 초과하여”로, “1회 1개월, 2회
6개월, 3회 1년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[별표 1] <현행>

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(제9조 관련)			
구 입 금 액	일 수	임대료(원)	비 고
100만원 미만	1	8,000	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1	10,000	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1	12,000	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1	16,000	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1	19,000	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1	23,000	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1	27,000	
700만원 이상~800만원 미만	1	31,000	
800만원 이상~900만원 미만	1	34,000	
900만원 이상~1,000만원 미만	1	39,000	
1,000만원 이상~1,500만원 미만	1	55,000	
1,500만원 이상~2,000만원 미만	1	72,000	
2,000만원 이상~2,500만원 미만	1	93,000	
2,500만원 이상~3,000만원 미만	1	110,000	
3,000만원 이상~3,500만원 미만	1	136,000	
3,500만원 이상~4,000만원 미만	1	157,000	
4,000만원 이상~4,500만원 미만	1	165,000	
4,500만원 이상	1	178,000	
(단, 광역방제기는 1일 210,000원으로 한다.)			

※ 사용료 산정기준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가목
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× 85%(별표 1의2 다목), 백원단위 이하 절사

■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[별표 1] <개정 2000. 00. 00.>

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			
구입금액	일수	임대료(원)	비고
100만원 미만	1	8,000	
100만원 이상~200만원 미만	1	10,000	
20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	1	12,000	
3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	1	16,000	
400만원 이상~500만원 미만	1	19,000	
5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	1	23,000	
600만원 이상~700만원 미만	1	27,000	
700만원 이상~800만원 미만	1	31,000	
800만원 이상~900만원 미만	1	34,000	
900만원 이상~1,000만원 미만	1	39,000	
1,000만원 이상~1,500만원 미만	1	55,000	
1,500만원 이상~2,000만원 미만	1	72,000	
2,000만원 이상~2,500만원 미만	1	93,000	
2,500만원 이상~3,000만원 미만	1	110,000	
3,000만원 이상~3,500만원 미만	1	136,000	
3,500만원 이상~4,000만원 미만	1	157,000	
4,000만원 이상~4,500만원 미만	1	165,000	
4,500만원 이상	1	178,000	
< 비고 > 1. 임대료 산정기준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제1호다목 -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× 85퍼센트(백 원단위 이하 절사) 2. 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는 1포대(40킬로그램) 당 1,000원으로 한다.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농기계 임대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 <u>이라 함은</u>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 3.·4. (생략) 5. “사용자”란 <u>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,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(주말농업인 포함)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</u> 6. (생략) 제8조(임대기준 등) ①·②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3.·4. (현행과 같음) 5. “사용자”란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가족을 포함한다.(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</u> <u>가.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(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)</u> <u>나.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(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)</u> 6. (현행과 같음) 제8조(임대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략)

③ 삭 제

④ 임대사용 기간은 해당 농기계
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
일단위로 계산하되, 입·출고
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
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를
조정할 수 있다.

⑤ 농기계 중 농업용 굴삭기, 스
키드로더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
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안전
교육 수료증을 지닌 사람에 한
정하여 임대한다.

제9조(사용료 등) ① ~ ③ (생
략)

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농기
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
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다
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.

1. 운반차량 2.5톤 미만 1회 15,0
00원(왕복 30,000원)

2. 운반차량 2.5톤 이상 1회 20,0

과 같음)

④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
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
로 계산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
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전일
임대와 반일임대로 나누어 운영
할 수 있다. 다만, 전일임대의
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
수 있다.

1. 전일임대: 09:00부터 18:00까지

2. 반일임대: 09:00부터 13:00까지

⑤ ----- 굴착기 ---

-----.

제9조(사용료 등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1회
1만원(왕복 2만원)을 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u>00원(왕복40,000원)</u> 제12조(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) ① (생략) ② 사용허가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: <u>1회 1개월, 2회 3개월, 3회 6개월</u> 4. 임대기간을 <u>초과하여</u> 반납한 경우: <u>1회 1개월, 2회 6개월, 3회 1년</u> 5. (생략) ③ (생략)	제12조(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 <u>6개월</u> 4. ----- <u>무단으로 초과하여</u> ----- --- <u>6개월</u>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**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의와 규칙을 위한 조문 정비 및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 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작성자: 농촌정책과장 김화진

참고**관계법령(발췌)****□ 농업기계화 촉진법**

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

[별표 1의2] 임대사업 시행기준(제2조의2제2항 관련)